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. 11. 15 선고 2024가단240899 판결 [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]

## 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민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11. 15.

## 주 문

1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,
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
나. 1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9. 24.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다. 2024. 10. 1.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1,1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2.

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청구의 표시

원고가 2023. 9. 16.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,000만 원, 차임 월 100만 원(부가가치세 별도), 기간 2023. 10. 1.부터 2025. 9. 30.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.

피고들이 2023. 12. 1.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아래 각 청구를 한다.

가. 임대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

나. 2023. 12.부터 2024. 9.까지 10개월 연체한 차임 11,000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중 보증금 10,000,000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차임 1,000,000원의 지급

다. 2024. 10. 1.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1,100,000원 상당의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

### 2. 적용 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변론 없이 하는 판결)

판사 염원섭

별지